#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20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맹성규·이연희·박균택

박해철 • 노종면 • 박용갑

이인영 · 이성윤 · 남인순

이훈기 • 윤종군 • 윤후덕

박찬대 • 모경종 • 이기헌

최기상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

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 법률 제 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4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 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

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보전 등을 위하여"를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로, "국무회의 심의"를 "제49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수 있다"를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 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국가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u>조사</u> ) <u>국</u>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u>조사ㆍ</u>
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	평가) ①
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	
<u>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u>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u>요구할 수 있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u>장 정보</u>
로 정하는 사항	
<u>&lt;신 설&gt;</u>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u>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사항
<u>&lt;신 설&gt;</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신 설>

제2장 <u>공원녹지기본계획</u> <<u>신</u> 설>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 가기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 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 한 사항
-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 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렁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 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u>보전 등</u> 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 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 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 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 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보전, 국 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제49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 ----. 이 경우 도시 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
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
<u>다</u> .
③ 제1항에 따른
<u>지정절차에 관한</u>
사항은

- 제49조의2(국가도시공원위원회)
- ①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 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
   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

   정에 관한 사항

-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

   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 5.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